

제2장

러시아 식품생산 및 수입현황



1. 식품생산 현황

가. 식품산업

- 러시아 식품산업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발전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음. 1998년 8월 루블의 평가절하는 수많은 외국계 생산업자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으며 소비자들은 수입제품을 감당할 수 없게 됨. 경제침체 전에 식품산업은 연간 약 10% 성장함
- 농업부문의 침체와 식품가공산업을 대한 수년간 등한시하여 공급물량 개선에 제약이 있고 상당한 양의 식품은 여전히 수입되어야 하는 상황임. 러시아에서 수입은 전체 국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대도시들에서는 50%를 넘어서고 있음. 수출전선에서 러시아 식품 수출업자는 농업 부문에 관한 러시아의 관세로 인해 가해진 상호조치로 해외의 강경한 보호주의 조치에 직면하고 있음
- 식품가공산업은 국내외 제조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현지기업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 사업자들도 투자 및 홍보 등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영세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음. 시장의 선두주자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밖의 지역들로 확장 및 통합에 주력하는 특징을 보임

<러시아 식품 생산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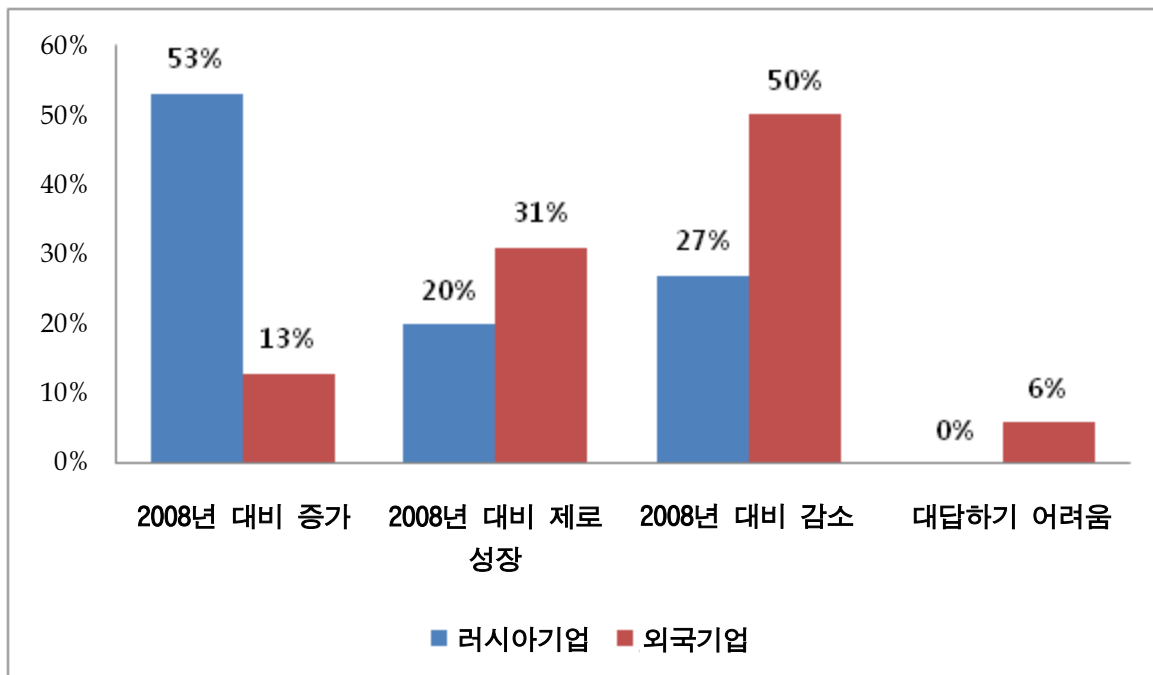
구분	1992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8/'07 대비 (%)
제조업 전체	81.8	47.5	51.0	58.0	64.1	69.0	74.7	81.8	84.4	103.2
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	80.0	50.2	54.5	67.5	70.5	75.2	80.5	85.4	86.3	101.1

출처: 연방통계청

나. 러시아 식품산업부문 발전 동향 전망

- 리서치회사 'Ernst&Young'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식품산업 부문 발전 전망에 대해 외국기업들은 러시아기업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들 중의 39%(대다수 외국기업)는 직접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식품산업 부문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비해, 응답자의 32%(주로 러시아기업)는 시장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그 외 나머지 응답자들은 2009년에는 전년대비 제로성장을 보인다는 견해를 밝힘

<2009년 러시아 식품산업 부문 발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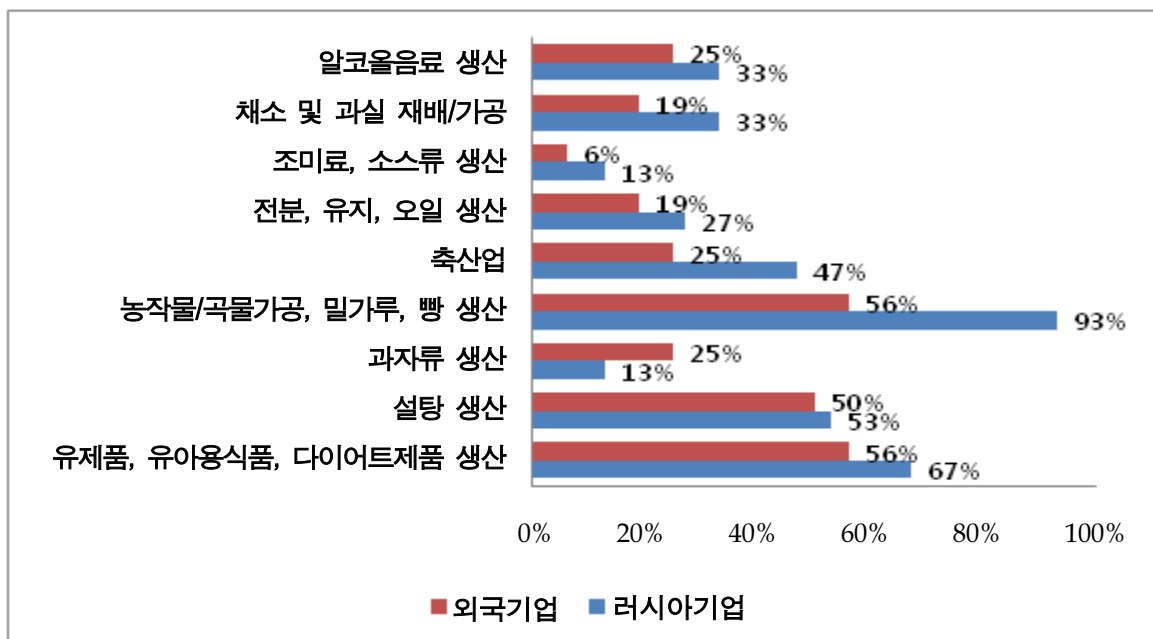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 알코올음료 부문 관련 기업들은 시장이 10-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수요가 가장 값싼 알코올제품 브랜드로 전환되고 불법 제품의 규모가 증가한 결과로 보고 있음. 또한 생산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소량 포장 선호로 전환되고 있다(예를 들어, 0.75L→0.5L)고 지적함. 무알코올 음료 생산업자들은 시장이 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조미료, 소스류, 스낵류, 수하리끼(건조흑빵)의 생산은 소비자 수요가 일차 필수품(마카로니류, 곡물, 빵) 부문으로 전환됨으로써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유제품 생산부문은 제로성장을 보이거나 혹은 유제품 종류에 따라 5-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과자류 생산업자들의 경우, 일부는 제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부는 5-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반해, 육류제품 및 베이커리제품 생산업자들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육류제품 부문은 15% 성장이 예상되고 베이커리제품 부문은 2-5% 성장이 예상됨
- 이와 같이, 경제위기 영향으로부터도 가장 보호를 받은 부문은 1차 필수식품 생산(농작물/곡물 생산, 축산업, 설탕 생산)이며, 이 부문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

<경제위기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식품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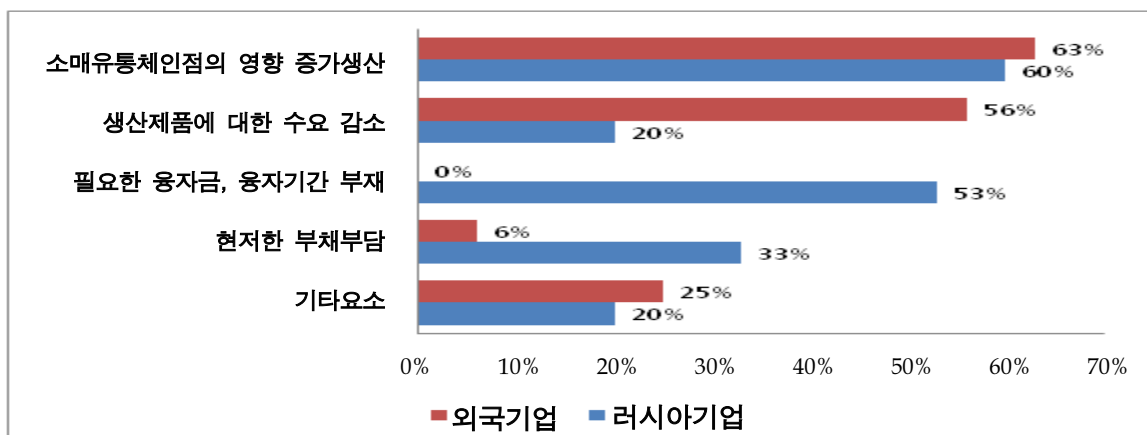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 러시아 식품산업에서 방해요소

-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식품산업 생산자들에게 있어 주요 문제점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소매유통업체의 영향임. 60%의 러시아기업과 63%의 외국기업 응답자들이 이 견해에 동조함
- 경제위기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주로 외국기업들은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훨씬 더 값싼 브랜드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다고 밝힘. 이는 러시아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루블의 평가절하로 인해 러시아산 제품에 비해 수입산 제품의 가격이 비싸진 결과라 할 수 있음
-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러시아기업들에게 있어 본질적인 문젯거리는 부채부담이 현저하게 늘어난 점과 필요한 융자금과 융자기간이 부재하다는 점임. 이에 반해 외국기업들은 자금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편이며 주로 자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음
- 그 외 방해요소들로는 지역 디스트리뷰터들로부터의 지불 징수 문제, 러시아 정부 규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 원료 가격인상(특히, 수입원료 가격인상)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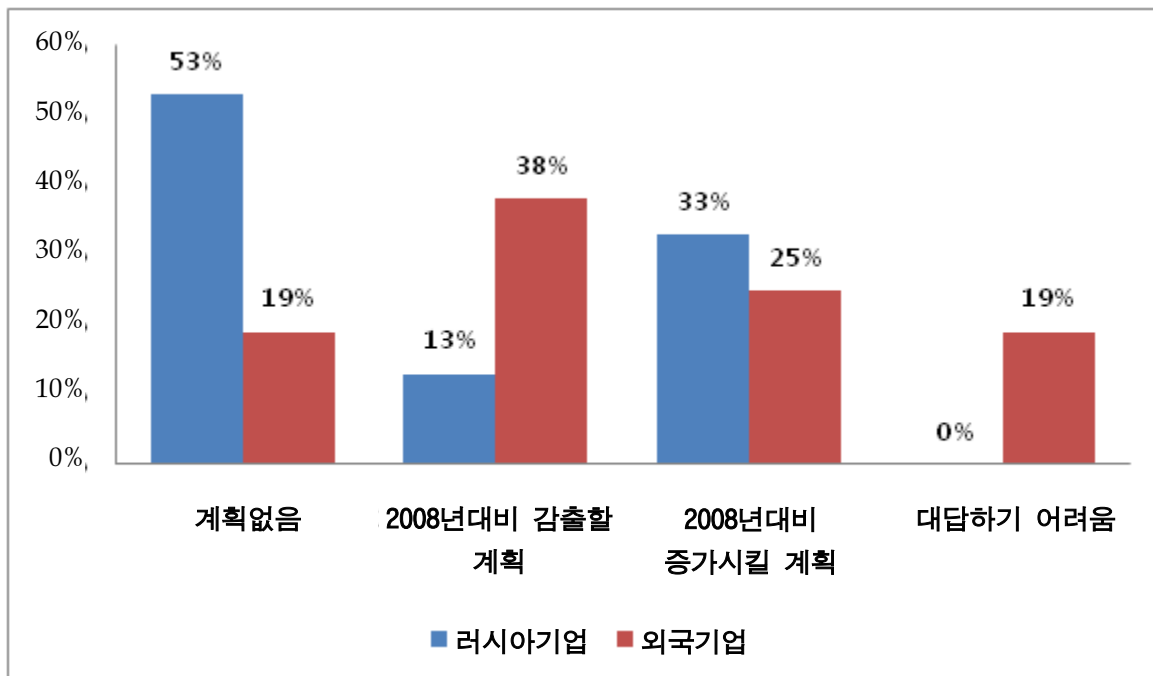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소>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 2009년 제품 수요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는 외국기업들은 판매예산을 5-10% 감축시킬 계획이거나 혹은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루블 평가절하와 연관된 문제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판매량 지표 감소를 메워나감으로써 판매예산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판매예산을 감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러시아기업은 외국기업보다 약 3배 가량 낮은 편이며(총 13%), 이와 동시에 53%의 러시아기업이 판매예산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09년 판매 전망 수정>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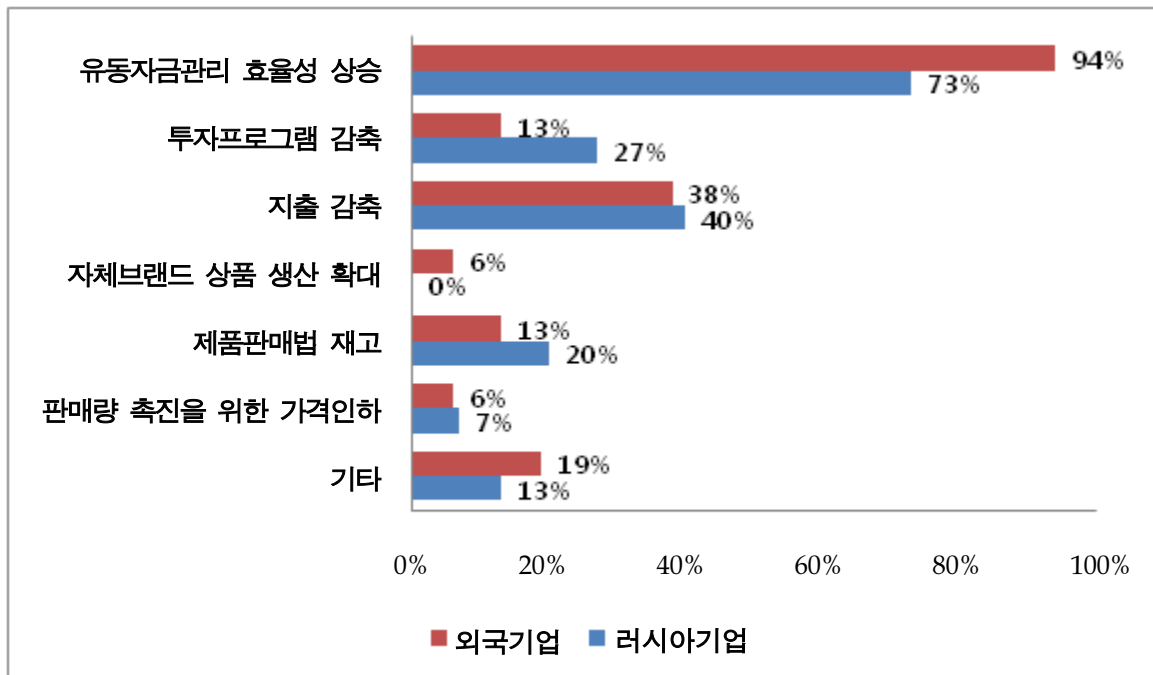
□ 경제위기 극복전략

1) 경제위기 조건 하에서 시장관계자들의 전략

- 대략적으로 동일한 문제점에 부딪혔던 기업들은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음. 경제위기 속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에 직면하게 됨 :

- ☞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문제
- ☞ 소매업체와 디스트리뷰터 측으로부터 지불연기가 늘어남으로써 채무 차입금 반환 지체
- ☞ 자본을 구할 통로 제한

<경제위기 파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실행한 조치들>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 이를 고려하여 러시아 및 외국계 시장관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유동자금 관리 효율성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함
- 두 번째 경제위기 극복전략은 지출 감축으로, 러시아기업(40%)과 외국기업(38%)은 지출의 최적화를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지출 감축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러시아기업은 마케팅 및 광고 예산을 감소시키고 인원이출을 감축시키려 함
 - 이에 비해, 외국기업은 우선 공석 인원을 뽑지 않거나 교육 및 자격승급 프로그램과 같은 부분에서 인원이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오직 19%의 외국기업들만 마케팅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며, 그 나머지는 계획했던 예산을 변경하지

않거나 혹은 그 반대로 오히려 경기침체 조건 속에서도 자사 제품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부가적으로 투자하려고 함

- 투자 프로그램 감축은 자금 공급이 어려운 러시아기업들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대다수 외국기업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러시아 현지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임
- 소비자 수요가 저가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하여 러시아기업(20%)과 외국기업(13%)은 제품판매법을 재고할 예정임
- 소매유통체인점들의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상품 생산 확대 혹은 선도 생산업체의 유명브랜드 상품 생산 확대, 판매량 촉진을 위한 가격인하도 경제위기 극복조치로 실행되고 있으나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소매유통체인점들의 '자체브랜드(private brand)'로 혹은 선도 생산업체의 유명브랜드로 계약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위기 전에 자주 이용되던 전략임
 - 선도 생산업체의 유명브랜드로 계약 생산하는 경우, 특히 러시아영세업체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이 방법은 생산자, 주문자 양측에 상호 이로움을 안겨 주었음. 즉,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품생산을 중단없이 가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었고, 주문자 입장에서는 공장건설이나 공장매입에 투자하지 않고도 유명브랜드 제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소매유통체인점들의 브랜드로 계약 생산하는 경우, 특히 자사브랜드의 소매유통망 진출을 위한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러시아 업체들에게 대형소매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

2) 인원삭감

- 인원에 들어가는 지출은 식품산업 관련 기업들의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의 지출 삭감은 단기적 전망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음.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기업들은 교육 프로

그럼과 복지비 및 특혜에 들어가는 지출을 삭감하고 고용인 임금을 삭감하기도 함. 인원지출의 최적화를 위해 기업들이 실시하는 가장 잔혹한 조치는 정원 삭감임

- 외국기업들은 2008년에 정원 삭감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교육 프로그램에 소비되는 지출을 줄여나갔음. 이에 반해 러시아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부채로 인해 이미 2008년에도 인원수의 10%에서 30% 규모까지 정원 삭감을 실시해야만 했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기업(63%)과 러시아기업(27%)은 2009년에도 고용인 삭감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 및 외국기업 13%는 10%미만의 정원 삭감을 실시할 예정이고 러시아기업(13%)과 외국기업(19%)은 10-15%의 인원 삭감을 통해 지출의 최적화를 실현할 계획임

3) 투자 예산

- 2008년에 외국기업은 러시아기업보다 더 막대한 자금을 자사 생산 개발에 투자함

<2008년 투자 프로그램 예산>

투자액	러시아기업	외국기업
5백만 달러 이하	47%	29%
5-10백만 달러	20%	14%
10-25백만 달러	20%	21%
25-50백만 달러	7%	14%
50백만 달러 이상	7%	21%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 2008년 예산과 비교하여 2009년 투자 프로그램 예산을 수정하지 않는 러시아기업과 외국기업 비중은 각각 47%, 64%이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각각 53%, 14%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오히려 예산을 늘리려는 외국기업도 21% 있으며, 특히 유제품, 유아용 식품과 다이어트제품 생산업체들이 2008년보다 투자예산을 증대시킬 계획임
 - 2009년 투자 예산을 2008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인 외국기업은 주로 인원 삭감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려고 함
- 러시아기업(53%)은 예산 프로그램을 평균 50% 삭감할 계획임. 생산 개발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줄이는 러시아기업들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의 몇몇 부분들에서는 투자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2009년에 축산업 부문 러시아 생산자들에게 총 740억 루블을 종결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부가적으로 융자해줄 예정이며 총 170억 루블의 투자단기대출금리 보조금을 지원할 것임

4) 마케팅 예산

- 러시아기업들은 마케팅 예산 규모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현저히 뒤처지고 있음. 2008년에 대다수 외국기업(53%)은 총매상고에서 5%이상을 마케팅 예산으로 사용했으며, 대다수 러시아기업(67%)은 총매상고에서 3%이하를 마케팅 예산으로 책정했음. 특히 알코올음료 및 무알코올음료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러시아 및 외국기업이 5%이상 규모의 마케팅 예산을 지출함

<마케팅 예산>

총매상고 대비(%)	2006		2008	
	러시아기업	외국기업	러시아기업	외국기업
예산 부재	5%	0%	-	-
1% 이하	27.5%	0%	27%	13%
1-2.9%	20%	0%	40%	0%
3-5%	32.5%	41.7%	13%	33%
5% 이상	15%	58.3%	20%	53%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 대다수 러시아기업(57%)과 외국기업(56%)은 2009년 마케팅 예산을 변경 없이 2008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그 외 외국기업(25%)은 2009년에 자사 브랜드의 소매유통망 진출 확대를 위해 평균 20% 증가시킬 예정임
- 외국기업들은 마케팅 예산을 수정하지 않거나 혹은 고용인 정원 삭감을 단행 하더라도 마케팅 예산을 증가시키기도 함
- 이에 비해, 마케팅 비용을 평균 40% 줄일 계획인 러시아기업(36%)은 특히 농작물/곡물가공, 곡분 및 빵 생산 부문에 속하고 있음

□ 경제위기 → 향후 발전을 위한 기회

- 대다수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자사가 속한 부문에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음
- 경제위기가 제시하는 주요 가능성은 몰락한 영세 생산업자들이 떠나간 틈새 시장을 차지하거나 판매 지역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서 점유율 증대, 지출 최적화를 통한 실무적 효율성 상승이 있음
- 또한, 경제위기는 소매유통체인점들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확립하게 해주고, 식품산업 생산업체들에게 주요 방해요소 중의 하나인 소매유통체인점의 증가 되는 압력을 줄여줌

<경제위기로 인한 발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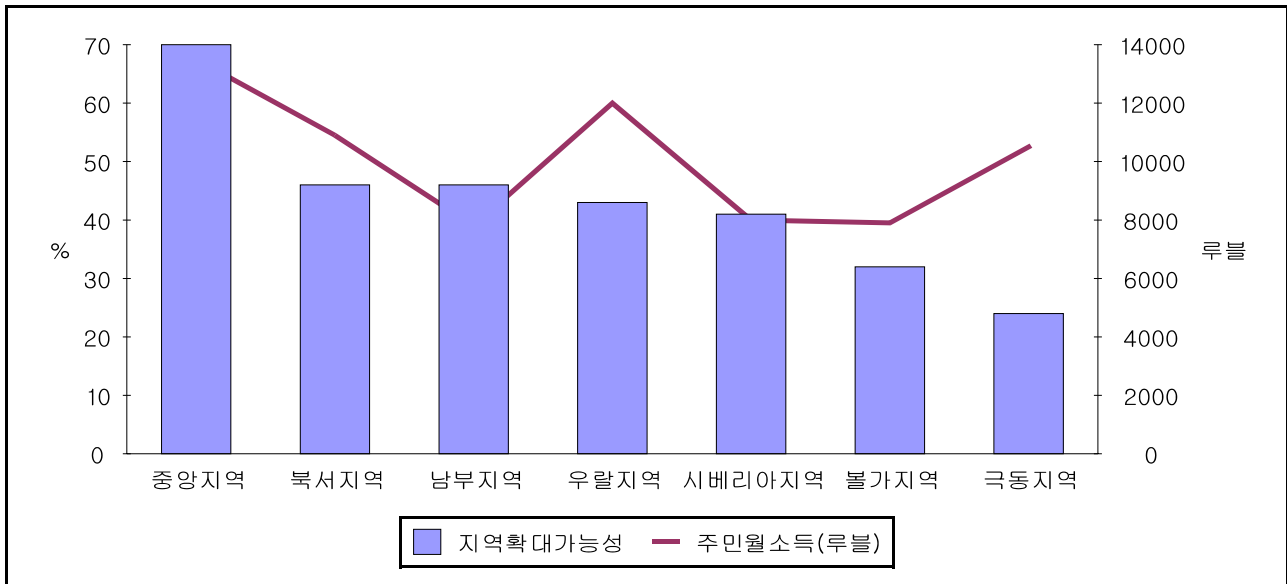
가능성	러시아기업	외국기업
지출 최적화를 통한 기업 운영 효율성 상승	67%	69%
소매체인점의 압력 감소와 장기적 파트너십 확립	47%	19%
영세 생산업자들을 사들이거나 그 틈새시장을 차지하여 판매지역 확대, 시장 세그먼트 규합	67%	56%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2009년'

- 러시아 지역들 중에서 판매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곳은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 연방관구(70%),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의 북서연방관구(46%), 남부연방관구

(46%), 우랄연방관구(43%), 시베리아연방관구(41%), 불가연방관구(32%), 극동연방관구(24%) 순을 보임

- 판매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월소득 수준과 각 지역마다 우위를 차지하는 구체적인 식품 분야 생산업자의 현황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출처: 'Ernst&Young'의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러시아 연방관구별 인구 및 개인소득>

구분	인구(백만명) {전체인구수 대비 %}	1인당 월평균 소득 (USD)	면적(백만km ²) {전체면적대비 %}
중앙연방관구	37 {26}	699	650 {4}
불가연방관구	31 {22}	366	1,037 {6}
남부연방관구	23 {16}	283	591 {3}
북서연방관구	14 {10}	544	1,687 {10}
우랄연방관구	12 {8}	630	1,818 {11}
시베리아연방관구	20 {14}	468	5,145 {30}
극동연방관구	7 {5}	554	6,169 {36}
러시아 전체	144 {100}	532	17,098 {100}

출처: 연방통계청

주: 2008년 2월 기준

<개인소득수준별 러시아 지역 Top 15>

순위	러시아 지역명	개인소득수준 (십억루블)
1	모스크바	334
2	모스크바 주	110
3	상트-페테르부르크	70
4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70
5	튜멘 주	66
6	크라스노다르 주	49
7	타타르스탄 공화국	47
8	사마르 주	46
9	첼랴빈스크 주	43
10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42
11	로스토프 주	40
12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40
13	케메르 주	38
14	페름 크라이	37
15	니제고로드 주	36

출처: 연방통계청

주: 2008년 2월 기준, 1\$=24.53루블

- 경제위기 조건 속에서 식품산업 시장의 다른 세그먼트들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러시아기업(13%)과 외국기업(6%)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임
- 러시아기업들은 향후 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자금을 은행대출(87%)과 자사 자본금(80%)으로 주로 조달하며, 러시아정부가 정한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함. 또한, 위기 상황에도 기반이 탄탄한 러시아 우량기업들은 전략적인 투자가들로부터 자금공급을 확보하기도 함

- 외국기업들은 앞으로의 생산 발전을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본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75%) 자사자본금(50%)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은행대출을 고려하는 외국기업 비중(13%)은 낮은 편임

<러시아 식료품 부문 선도 기업>

회사	국가	식품부문	판매 (십억 루블)	판매 (백만 달러)	회계 연도	고용 인원	설립 연도
다농 러시아	프랑스	유제품, 청량음료	na	21,885 *	na	na	na
발티카- 칼스버그	러시아	맥주	93	2,994	'08-12	12,000	1992
빔-빌-단 푸드	러시아	유제품, 청량음료	88	2,824	'08-12	17,000	1992
CEDC	폴란드	알코올음료, 청량음료	na	1,647*	'08-12	na	na
네슬레 러시아	스위스	인스턴트식품, 핫음료, 청량음료	50	1,609	'08-12	na	na
유니밀크	우크라이나	유제품	na	1,420e	na	na	2002
하이네켄	네덜란드	맥주	na	1,200e	na	na	na
체르키조보	러시아	육가공품	36	1,167	'08-12	na	na
코카-콜라 러시아	미국	청량음료	na	1,000e	na	4,000	1991
에페스 인터내셔널	터키	맥주	na	1,040*	'08-12	na	na
레베단스키- 펍시코	러시아	과실주스	na	950e	na	na	na
로센	우크라이나	과자류	na	850*	'08-12	na	na

회사	국가	식품부문	판매 (십억 루블)	판매 (백만 달러)	회계 연도	고용 인원	설립 연도
유나이티드 컨펙서너스	러시아	과자류	na	805e	na	17,000	na
크라프트	미국	과자류, 핫음료, 청량음료	na	650e	na	na	na
시너지	러시아	주정	17	547	'08-12	na	na
슬라드코	러시아	과자류	na	150e	na	5,000	2001
딕모프 소시지	러시아	육류	na	150e	na	na	na
유나이티드 베이커스 그룹-켈로그	러시아	구워낸 제품 (baked goods)	na	120e	na	4,000	na
선 인베브	러시아	맥주	na	na	na	8,000	1999
유니레버 러시아**	영국	식료품	na	na	na	6,500	1992
루스키 프로덕트	러시아	인스턴트식품, 핫음료, 청량음료	na	na	na	na	na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영국	와인	na	na	na	na	2008
하인츠 페트로소유즈	미국	조미료	na	na	na	na	na

출처: Company Release, BMI

주: 판매액이 높은 순서로 기술함, na=not available, e=추정치

* 그룹 판매, ** '발티모어'와 '인마르코 서브시디어리스' 포함

2. 식품유통 현황

□ 러시아 대형식품소매업

- 러시아 대형식품소매업 시장은 2008년 기준 약 283억 달러 규모로 급속도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대형식품소매업 부문에는 약 150여개의 소매체인들과 총 23,388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러시아 대형식품소매업 시장 구조(매장 개수 기준)>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슈퍼마켓	760	836	936	1,300	1,600	1,800	2,000	2,300	2,415
하이퍼마켓	12	18	20	25	30	60	95	120	128
할인점	421	755	1,150	1,486	1,792	2,102	3,000	3,500	3,615
편의점	38,300	33,321	29,821	25,247	23,005	22,336	20,000	18,000	17,230
합계	39,493	34,930	31,927	28,058	26,427	26,298	25,095	23,920	23,388

출처: Trade publications, 연방통계청, ACNielsen, BMI

- 러시아 대형식품소매업 시장에서는 ‘아산’ 및 ‘메트로’ 등 다국적 소매업체와 ‘X5 리테일 홀딩’, ‘마그니트’ 등 현지 소매업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소매유통업체인 ‘월마트’와 ‘까르푸’의 진입은 수년간 예상되고 있음
- ‘월마트’는 지역소매업체 인수 등의 시장진입 전략과 더불어 시장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 바 있음. 두 글로벌 유통업체는 미래의 확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렌타’와 같은 하이퍼마켓을 주목하고 있고, ‘까르푸’는 슈퍼마켓 ‘시디모이 콘티넨트’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음
- 시장 진입 비용이 많이 들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소매유통업체들이 주로 선호하는 시장진입방법은 기존의 소매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것임

- 시장의 대다수 소매업체들은 현대적인 소매유통망이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러시아의 지역 소비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미 일부 지역대도시들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으며, 시장이 포화되지 않은 경우 지역 체인점들을 매입하고 있음. 러시아에서 소매판매점들은 외국 수입품에 그들의 문을 개방할 계획이며, 빠듯한 일정에 맞춰 필요한 물품 수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공급업체를 잘라낼 계획임. 업계 관측통들은 이러한 계획이 대다수 프리미엄 슈퍼마켓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2008년-2013년간 대형식품소매업 시장은 총 50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하게 되어 7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러시아는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임

<러시아 대형식품소매업 유형별 판매액>

단위: 십억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f	2010f	2011f	2012f	2013f
슈퍼마켓	7.04	8.86	11.49	14.7	14.98	15.98	18.68	21.01	23.86
하이퍼마켓	2.72	3.6	4.86	6.45	8.01	9.42	10.55	11.7	12.76
할인점	4.08	4.9	5.88	7.05	8.46	9.48	10.61	11.89	13.22
편의점	0.08	0.09	0.11	0.13	0.15	0.17	0.19	0.21	0.22
전체 대형식품 소매부문	13.92	17.45	22.34	28.34	31.6	35.05	40.04	44.81	50.04

출처: 통계위원회, 르네상스 캐피탈,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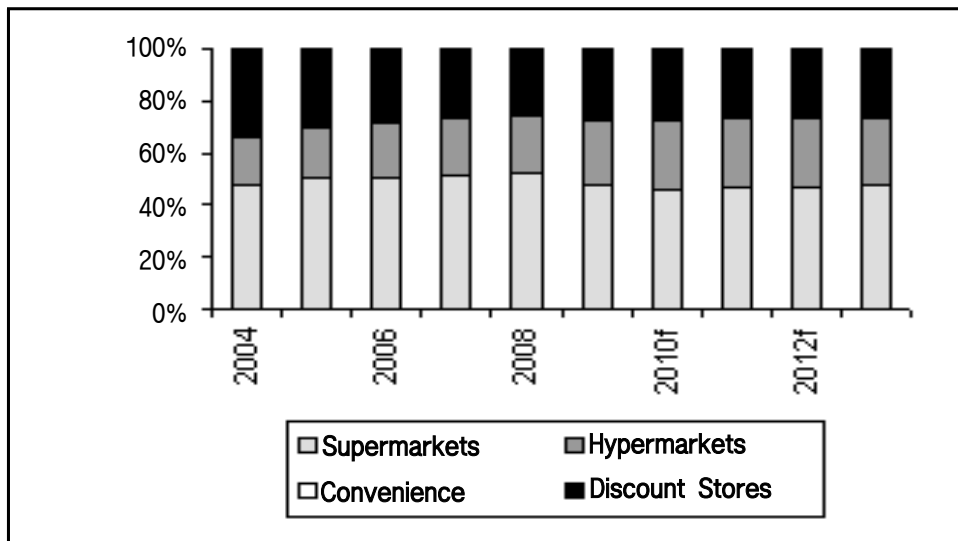
주: f=전망치

- 할인점과 슈퍼마켓은 2013년에 식품소매업 중 주된 형태가 될 것이며 하이퍼마켓이 그 뒤를 따를 것임. 할인점 '마그니트'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할

인점 형태는 소비자 구매력이 모스크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높음. ‘마그니트’ 체인은 2006년 총 판매액에서 ‘메트로’ 뒤를 바짝 추격하여 2006년에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판매액이 높은 대형식품소매업체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두 번째로 올라섰음

- 2008년-2013년간 할인점은 판매액(달러) 기준 87.5% 성장, 슈퍼마켓은 62.2% 성장, 하이퍼마켓은 9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소매시장 유형별 평가(%)>



출처: 러시아연방중앙은행, CISSTAT, 통계위원회, BMI

주: f=BMI 전망치

- 그러나 러시아의 대형식품소매업 부문은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출 가능성을 저하시켜 지역 소매업체들의 운영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임
-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난공불락일 것처럼 보였던 소비 붐은 급격히 사그라졌음. 경제상황 악화, 소비지출 약화, 소매업체와 식료품 제조업체의 대출 어려움으로 인해 유통부문의 운영 효율성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음

- 대규모 소매업체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장기적인 위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현재의 경기침체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수의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소비둔화와 대출 부족으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없거나 매입당할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불경기 이후의 러시아에서는 더욱 통합된 대형식품소매유통망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됨

<러시아 식품소매업 유형별 판매 비율(%)>

구분	2008	2018f
조직화된 업체/ 대형식품소매업체	32%	70%
비조직화된 업체/ 독립업체	68%	30%

출처: BMI

주: f=전망치

- 전반적으로, 소매업체들은 하나 혹은 두 가지 운영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 그룹들을 가질 수 있는 멀티-유형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려 할 것임
- 예를 들어, 할인점 ‘마그니트’는 당사의 하이퍼마켓 유형인 ‘탄데르’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함
- 원래 최고급 슈퍼마켓 체인인 ‘시지모이 콘티넨트’는 할인점으로 진출하겠다고 발표함. 최근 1년 사이 매장에서 할인을 실시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음. ‘까빼이까’와 ‘빼조로치카’와 같은 할인점에는 자국산의 저가 제품들 중심으로 입점되어 있어 제품구색이 그리 다양하지 않은데 비해, 고급 슈퍼마켓인 ‘시지모이 콘티넨트’는 다양한 수입산 및 러시아산 제품들 등 선택의 폭이 넓은데다 현재 가격인하까지 단행한 것임. 그로 인한 매출 총액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중·하 소득층들의 방문빈도를 증가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소매업체들은 비식품 아이템들과 프리미엄, 고부가 가치 브랜드 및 인터내셔널 제품들의 판매를 통한 타이트한 마진을 피하고자 할 것임. 지역 그룹 '마르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빌라' 체인을 개발했던 독일의 '레베 그룹'은 캐쉬&캐리 부문에서 거의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트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셀그로스 캐쉬&캐리' 체인 진출에 나서고 있음
- 비록 러시아에서 자동차 소유 비율이 대부분의 다른 중동부 유럽시장에서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이퍼마켓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체인점들은 아파트 주거단지 옆, 지하철 주변, 기타 경유경로에 위치한 미니-하이퍼마켓과 대형 슈퍼마켓에 좌우될 것임. 그러나 지역 성장의 주요 결정요소는 향후 러시아 부동산 시장의 개발이 될 것임. 원칙적으로 현대적인 소매유통공간은 부족한 편이며 녹지대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높은 자금을 요구하고 시간을 끌게 함
- 러시아 대형식품소매업 부문에는 약 150여 개의 소매체인들이 운영되고 있음. 시장은 아주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러시아 Top5 소매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여도 6%가 되지 않음

<업체별 식품소매업 시장 점유율(%)>

X-5	메트로	탄데르	아산	덕시	시지모이 컨티넨트	렌타	까페 이까	라멘 카	빅토 리아	기타
1.0	0.8	0.7	0.6	0.3	0.3	0.3	0.3	0.2	0.3	95.2

출처: IMCA Consumer Intelligence

주: 2008년 기준

<러시아 대형식품소매유통산업에서 주요 소매업체>

회사	국가	판매 (십억 루블)	판매 (백만 달러)	회계 연도	소매점 명칭 (유형)	소매점 개수	설립 연도
X-5 리테일 홀딩	러시아	275	8,844	'08-12		1,179	1998
					베쵸로치카 (할인점)	900	
					베레끄료스톡/시티 하이퍼마켓 (하이퍼마켓)	15	
					카루셀/메르카도 (하이퍼마켓)	53	
					베레끄료스톡 (슈퍼마켓)	211	
마그니트	러시아	165	5,326	'08-12		2,103	1994
					마그니트 (할인점)	2,100	
					탄데르 (하이퍼마켓)	3	
메트로	독일	156	5,007	'08-12		52	2001
					메트로 (캐쉬&캐리)	41	
					레알 (하이퍼마켓)	11	
아산	프랑스	155	4,983	'08-12	아산 (하이퍼마켓)	26*	2002
렌타	러시아	63	2,040	'08-12	렌타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34	1993
덱시 홀딩	러시아	60	1,923	'08-12		493	1998
					덱시 (할인점)	482	
					메가마트(하이퍼마켓)	5	
					미니마트 (슈퍼마켓)	6	
까뻬이까	러시아	59	1,890	'08-12	까뻬이까 (할인점)	404	1998

회사	국가	판매 (십억 루블)	판매 (백만 달러)	회계 연도	소매점 명칭 (유형)	소매점 개수	설립 연도
빅토리아	러시아	38	1,228	'08-12		216	na
					크바르탈 (편의점)		
					도쉐보 (할인점)		
					빅토리아 (슈퍼마켓)		
					케쉬 (캐쉬&캐리)		
시지모이 콘티넨트	러시아	48	1,549	'08-12		141	1994
					시지모이 콘티넨트 (슈퍼마켓)	132	
					시지모이 콘티넨트 (하이퍼마켓)	9	
도린다 홀딩 SA	룩셈부 르크	33	1053	'08-12	오'케이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16	2002
라멘카 키롭스키- 예카테린부 르크 OAO (미그로스 투르크)	터키/ 러시아	na	835e	na	람스토어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44*	1997
베스테르	러시아	na	720	na	베스테르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52	1990
알피	러시아	na	660	na	알피 (하이퍼마켓)	64	na
스파르	오스트 리아/ 러시아	na	450e	na	스파르 (슈퍼마켓)	90	2001

회사	국가	판매 (십억 루블)	판매 (백만 달러)	회계 연도	소매점 명칭 (유형)	소매점 개수	설립 연도
패터슨	러시아	na	445e	na	패터슨 (슈퍼마켓)	105	1997
마르타 홀딩	러시아	na	410e	na	그로스마트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146	2003
사르나투스 트레이딩	러시아	na	341e	na		na	2003
아즈부카 브쿠사	러시아	na	325e	na	아즈부카 브쿠사 (슈퍼마켓)	23	1992
빌라(레베/ 마르타 조인트-벤처)	독일/ 러시아	na	292e	na		na	2004
칼린카- 스톡크만	핀란드	na	41e	na	칼린카-스톡크만 (슈퍼마켓)	4	1998
까르푸	프랑스	na	na	na	까르푸 (하이퍼마켓)	1	2009

출처: Company Results, Trade Press, BMI

주: 판매액이 높은 순서로 기술함, na=not available, e=BMI 추정치

* 2007년 말에 람스토어에서 아샨으로 전환된 14개 점포 포함

3. 식품수입 현황

□ 개황

- 러시아에서 수입은 전체 국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대도시들에서는 50%를 초과하고 있음. 수출전선에서 러시아 식품 수출업자는 농업 부문에 관한 러시아의 관세로 인해 가해진 상호조치로 해외의 강경한 보호주의 조치에 직면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침체와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수년간의 등한시는 공급물량 개선을 억제시키고 있고 상당한 양의 식품은 여전히 수입되어야 하는 상황임. 사실 푸틴 총리는 최근에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식품수입에 시장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러시아는 농업 분야에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국내 소비를 위해 제조된 식품 점유율이 2020년까지 8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임. 2009년 초에 발표된 토지소유권 개혁을 감안하면 초기 신호는 긍정적인
- 러시아의 식품 무역적자는 2013년까지 단지 1.8%만 증가되는 등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러시아 식품, 음료·담배 무역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f	2010f	2011f	2012f	2013f
수출	1,349	1,491	1,608	1,845	1,371	1,441	1,563	1,688	1,778
수입	8,245	8,363	3,614	8,839	8,149	8,197	8,377	8,518	8,677
수지	-6,896	-6,873	-7,007	-6,994	-6,778	-6,756	-6,813	-6,830	-6,899

출처: 연방통계청, BMI

주: f=BMI 예측치

□ 2008년 러시아 식품 수입동향

-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러시아의 대외무역총액(교역액)은 전년대비 33.2% 증가한 7,350억 달러로 집계됨
 - 그중 CIS국가를 제외한 국가와의 대외무역총액 : 6,285억 달러(34% 증가)
 - CIS국과의 대외무역총액 : 1,065억 달러(29% 증가)
- 2008년 무역수지 : 2,012억 달러('07년 무역수지는 1,522억 달러임)
 - 수출액 : 전년대비 33% 증가한 4,681억 달러이며, 수출액 증가원인은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에 대한 평균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수입액 : 전년대비 33.6% 증가한 2,669억 달러이며, 수입액 증가원인은 기계 및 설비 수입 증가 때문임
- 러시아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네덜란드, 중국, 이탈리아, 터키, 일본, 미국, 폴란드, 영국, 핀란드 등
 - 한국은 러시아의 전체 교역상대국 중에서 2.5%(2008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백만 달러

교역국	2007				2008				성장률(%)		
	교역	수출	수입	교역비중(%)	교역	수출	수입	교역비중(%)	교역	수출	수입
전체	551,684.1	351,930.0	199,754.1	100.0	734,991.6	468,073.2	266,918.4	100.0	133.2	133.0	133.6
한국	15,004.9	6,167.0	8,837.8	2.7	18,305.9	7,788.7	10,517.3	2.5	122.0	126.3	119.0

출처: 연방관세청

- 2008년 러시아의 식품 및 농업원료(식물원료제외) 수입은 금액 면에서 약 333억 달러로, 연간 수입총액에서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비중은 13.2%임 (2007년은 13.8%)
 - 2008년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은 2007년 대비 금액 면에서 27.3% 성장, 물량 면에서 5.4% 성장

<러시아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동향>

단위: 십억불

구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러시아의 연간 수입총액	46.7	33.9	57.3	75.6	98.7	138	200	267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액 (직물원료제외)	13.2	7.4	12.0	13.9	17.4	21.6	27.6	35.2
수입총액에서 식품 및 농업원료의 비중(%)	28.1	21.8	21.0	18.3	17.7	15.7	13.8	13.2

출처: 연방통계청

주: 실제가격 기준

- 2008년 CIS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총액은 2,303억 달러임(35.6% 성장). 그중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액은 약 297억 달러로 수입총액에서 그 비중은 12.9%임(2007년보다 0.8%p 감소, 2007년 비중은 13.7%)
 - 식품 및 농업원료(직물원료제외) 수입은 전년대비 금액 면에서 27.6% 증가
 - 수입액 증가품목 : 신선·냉동 육류, 신선·냉동 가금육, 신선·냉동 어류, 버터, 커피, 차, 알코올음료 및 무알코올 음료
 - 수입량 증가품목 : 신선·냉동 육류(15.8%), 냉동 어류(1.9%), 감귤류(2.7%), 커피(16.9%)
 - 수입량 감소품목 : 원당(29.1%), 초콜릿(16.8%), 가금육, 백설탕, 해바라기씨유
- 2008년 CIS국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은 366억 달러임(22.5% 성장). 그중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액은 약 36억 달러로 수입총액에서 그 비중은 13.7%임(2007년 수준 유지)
 - 식품 및 농업원료(직물원료제외) 수입은 전년대비 금액 면에서 25.5% 증가
 - 수입량 증가품목 : 육가공품(1.5배), 옥수수(5.7배), 치즈와 뜨바록(응유)(22.7%), 초콜릿(24.1%)
 - 가격상승품목 : 밀(2.2배), 보리(1.7배), 해바라기씨유(1.6배), 옥수수(1.5배), 버터, 신선·냉동 육류, 어류, 초콜릿류

- 2008년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이 금액 면에서 전년대비 27.3% 증가한 원인 은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주요수입품목의 계약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 수입액 증가품목 : 신선·냉동 육류, 가금육, 치즈 및 프마록, 버터, 해바라기 씨유
 - 수입액 감소품목 : 밀, 보리, 원당, 백설탕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목 평균수입가격>

단위: USD/톤

품목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육류(신선, 냉동) (가금육제외)	1,525	1,145	1,232	1,402	1,460	2,335	2,440	3,073
가금육(신선, 냉동)	844	542	596	614	651	729	824	1,105
어류(신선, 냉동)	635	383	625	834	1,039	1,451	1,623	1,884
버터 및 기타유지	1,873	1,389	1,440	1,633	1,845	1,827	2,523	3,110
감귤류	524	285	351	403	508	588	669	738
커피	3,296	1,551	1,294	1,552	1,789	2,169	2,646	3,231
곡물	149	118	127	158	170	162	280	489
해바라기씨유	898	591	722	780	878	916	1,009	1,583
육류제품 및 육류통조림	1,547	1,344	1,608	1,666	1,725	2,615	3,139	4,018
원당	385	152	208	209	257	405	325	389
백설탕	456	297	392	409	428	495	478	530

출처: 연방통계청

<러시아의 주요 식품 수입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HS코드	품목	2007		2008		2009년 1-9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1-24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총액	-	26,142.80	-	33,321.6	-	18,577.8
0201-0204	육류(신선, 냉동)	1,417.6	3,432.8	1,618.8	4,920.4	875.7	2,860.6

HS코드	품목	2007		2008		2009년 1-9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7	가금육(신선, 냉동)	1,287.0	1,051.7	1,218.0	1,340.0	649.7	719.3
0302-0304	어류(신선, 냉동)	870.1	1,412.4	881.1	1,659.9	544.3	970.6
402	우유 및 연유	13.0	53.5	18.8	58.7	3.2	7.6
405	버터	75.3	173.4	84.4	248.2	45.9	114.8
805	감귤류	1,260.2	842.6	1,288.4	950.8	773.3	625.2
901	커피	64.6	170.8	75.5	243.9	62.5	168.9
902	차	181.6	432.3	181.8	510.9	129.2	341.9
10	곡물	-	298.3	-	467.6	-	171.8
1001	밀	465.4	73.4	178.7	61.8	74.0	18.6
1003	보리	272.6	69.5	131.5	50.9	30.4	4.1
1005	옥수수	93.5	64.5	362.3	182.6	35.9	57.6
1512	해바라기씨유	132.0	133.2	111.9	177.1	29.6	23.4
1602	육류제품 및 육류통조림	31.8	96.9	35.2	135.0	23.2	92.6
170111- 170112	원당	3,409.6	1,106.6	2,417.6	940.9	1 206.0	472.4
1701991000	백설탕	117.0	53.5	65.1	29.9	80.6	41.9
1801	카카오열매	66.9	141.3	60.1	158.0	32.7	95.6
1806	카카오 함유제품	133.9	438.4	141.4	550.0	79.0	261.5
22	알코올음료 및 무알코올음료	-	2,246.6	-	2,608.2	-	1,131.2
2402	시가 및 담배	-	104.7	-	156.1	-	87.9

출처: 연방관세청

□ 2009년 1-9월간 러시아 식품 수입동향

-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1-9월간 러시아의 대외무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9% 감소한 3,214억 달러로 집계됨
- 그중 CIS국 제외한 국가와의 대외무역총액 : 2,744억 달러(43.7% 감소)
- CIS국과의 대외무역총액 : 470억 달러(45.0% 감소)

- 2009년 1-9월간 무역수지 : 917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769억 달러 감소)
 - 수출액 : 전년 동기대비 44.3% 감소한 2,066억 달러이며, 수출액 감소원인은 2008년 말의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 급락 때문임. 하지만 2009년에 원자재 가격은 점차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수입액 : 전년 동기대비 43.1% 감소한 1,148억 달러이며, 수입액 감소원인은 수입 공급물량 감축 때문임. 수입품의 평균가격은 전년 수준 유지
- 2009년 1-9월간 러시아의 식품 및 농업원료(직물원료제외) 수입은 금액 면에서 약 186억 달러로 집계됨
- 2009년 1-9월간 CIS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품목 중에서 17.7% 차지(전년 동기보다 5.2%p 증가)
 - 식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금액 면에서 18.1% 감소
 - 수입량 감소품목 : 신선·냉동 육류(26.5%), 가금육(27.1%), 치즈와 프마룩(9.4%), 버터(29.2%), 감귤류(2.6%), 차(4.8%), 원당(35.2%), 곡물(40.5%)(그 중에서 쌀 19.6% 감소)
- 2009년 1-9월간 CIS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품목 중에서 18.6% 차지(전년 동기에는 12.9%임)
 - 식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금액 면에서 30.6% 감소
 - 수입량 감소품목 : 치즈와 프마룩(1.8%), 카카오 함유제품(3.7%), 해바라기씨유(69.0%)

□ 한국산 농축산물 수입현황

- 2008년 한국의 대러시아 농축산물 수출실적 : 271백만 달러 (2007년 234백만 달러 대비 15.8% 증가)
 - 2009년 1-9월간 수출실적 : 135백만 달러 (2008년 1-9월간 207백만 달러 대비 34.7% 감소)

<한국산 농림축산물 수입현황>

단위: kg, USD

품명	2007		2008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03,926,656	234,223,854	108,992,179	271,329,609	4.9	15.8
연초류	4,239,362	40,721,484	4,672,076	57,725,306	10.2	41.8
커피류	20,116,712	56,291,060	16,182,337	53,215,305	-19.6	-5.5
소오스류	23,304,254	38,833,924	24,341,559	51,273,375	4.5	32
식물성유지	3,390,722	4,202,201	9,819,067	16,795,524	189.6	299.7
과자류	5,253,536	19,504,832	4,612,495	16,534,529	-12.2	-15.2
음료	12,192,905	8,795,783	15,416,960	11,530,561	26.4	31.1
낙농품	5,934,092	8,960,236	6,911,713	11,246,086	16.5	25.5
과실류	10,260,771	8,917,587	10,209,108	9,383,054	-0.5	5.2
포유가축육류	4,530,513	19,218,244	1,818,827	9,203,269	-59.9	-52.1
기타육류	1,960,893	6,667,230	2,562,656	8,599,260	30.7	29
기타축산물 부산물	5,951,436	8,227,502	4,443,045	7,901,478	-25.3	-4
면류	1,937,616	5,576,446	2,079,758	6,951,241	7.3	24.7
채소류	2,403,140	2,126,747	3,199,769	4,084,606	33.1	92.1
기타조제농산품	1,080,953	2,094,957	1,421,176	3,391,695	31.5	61.9
식물성액즙	114,312	858,934	128,046	1,250,461	12	45.6
기타식물성물질	203,897	509,408	165,888	412,268	-18.6	-19.1
화훼류	4,481	91,887	18,171	374,685	305.5	307.8
주류	596,542	362,045	576,206	369,976	-3.4	2.2
코코아류	240,629	1,770,477	45,473	318,127	-81.1	-82
곡류	136,200	296,979	147,835	258,536	8.5	-12.9
당류	5,275	13,526	144,251	163,484	2,634.6	1,108.7
유지가공품	2,300	10,680	3,375	107,113	46.7	902.9

품명	2007		2008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빵류제조용	48,002	89,772	21,319	63,070	-55.6	-29.7
향신료	12,120	50,129	11,860	55,931	-2.1	11.6
서류	0	0	12,195	33,990	0	0
기타산식물	1,600	17,387	7,000	27,391	337.5	57.5
버섯류(농산물)	0	0	5,220	19,771	0	0
차류	10	1,308	5,944	17,783	59,340	1,259.6
포유가축류	20	32	1,230	10,384	6,050	32,350
전분	4,000	2,960	7,600	9,272	90	213.2
인삼류	34	2,096	5	1,278	-85.3	-39
동물성유지	0	0	15	800	0	0
단백질류	29	5,227	0	0	-100	-100
효모류	300	2,774	0	0	-100	-100
기타농산부산물	0	0	0	0	0	0

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

4. 식품수입정책

가. 수입규제 관련규정

■ 러시아에는 식품 안전 및 수입과 관련된 법과 수많은 명령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나 주요 법은 아래와 같음 :

○ 식품관련 법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 식품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
- 국민위생 및 보건에 관한 법
- 유전자공학활동 규제에 관한 법
- 에틸알코올, 주류 및 알코올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 및 취급규제에 관한 법
- 기술규제에 관한 법
- 수의과학법

○ 식품관련 규정

- 식품안전 및 영양을 위한 위생요건 (SanPiN 2.3.2.1078-01)
- 소비자 식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요건 (GOST-R 51074-2003)
- 식품첨가물을 위한 위생요건 (SanPiN 2.3.2.1293-03)

○ 러시아 통관 및 검역 관련 법

- 관세법
- 식물검역법

■ 수입제도 도입목적

- 관세제도 :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보호 및 국가재정수입 확충
- 수입허가제도 : 국가안보
- 수입쿼터제도 : 국내산업보호

- 강제인증제도 : 국내 소비자 보호
- 러시아어 라벨링 표기제도 : 소비자 필수정보 제공
- 수입규제 : 국내산업보호

나. 수입제도

1) 관세 및 통관제도

□ 수입관세

- 러시아의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관세는 통관가액 또는 단위당 유로화 금액이 일정률로 부과되는 기본관세율과 kg당 최소 유로화 부과를 혼용하고 있고, 기본수입관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로화 산정금액을 적용함. 또한 수입상품의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부과를 원칙으로 함
-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따른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도입하여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함
-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종전 7단계의 관세율을 4단계로 간소화하여 현재 수입관세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4단계(5%, 10%, 15%, 20%)의 종가세율이 적용됨
- 러시아는 수입대상국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분류한 106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고 있음
 - 러시아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국가를 원산국으로 하는 상품에는 최혜국세율(기본관세율)이 부과됨

- 이외에 CIS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탕, 알코올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CIS 회원국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 예외조치가 적용됨
- 또한 일반특혜관세(GSP)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과 후발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부 수입품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기본세율의 75%로 과세하고, 최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면세하며 우대세율 대상품목의 리스트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함
- 한국은 현재 러시아국가관세위원회 규정 제1539호(2003.12.15)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관세의 25%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최혜국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원산국으로 하는 상품 및 원산국을 추정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의 2배를 적용하고 있음

<러시아의 대상국별 관세체계>

구분	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
MFN 대상국	기본관세율	EU 회원국 포함
개발도상국	기본관세율의 75%(GSP)	106개국 (한국 포함)
최빈개발개상국	면세(GSP)	48개국
MFN 비대상국	기본관세율의 200%	-

□ 통관비용

-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적용되며, 통관수속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로는 통관비, 세관원 동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 : 세관신고가격의 18%

○ 소비세 : 사치품(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 엔진, 승용차 등)의 경우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20%에서 570%까지 소비세 부과

○ 세관수속비 : 통관비, 세관원 통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음

구 분	소요비용
통관비	최고 10만 루블(US\$4천)
세관원 통행료	2천 루블(50km까지) 4천 루블(200km까지) 초과 100km 당 1천 루블
세관창고 보관료	1루블/100kg.1일 2루블/100kg.1일 (특수시설)

□ 통관절차

- ① 1단계 : 제출된 서면 관세 신고서와 국경 검사대에서 송부해 오는 전자우편 내용 비교검사
 - 통관 신고서 수령 조건 체크
 - 통관 신고서 및 기타관련 서류 및 전자 통관서류 접수
 - 통관 신고서 등록
 - 통관 신고서 내용 체크
- ② 2단계 : 화물 검사 및 검사서 작성 (신고한 제품의 HS코드와 실제 물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비관세 규정 절차 준수 여부를 체크)
 - 통관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이 러시아가 현재 준수하고 있는 CIS HS코드와의 일치 여부 체크
 - 통관신고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입제품을 기재했는지 체크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관련사항 체크. 만약 특혜관세 해당 물품이면 동 사항 체크
 - 비관세 규정 준수 여부 체크
 - 관세 규정 준수 여부 등 체크

- ③ 3단계 : 모든 서면 신고서, 전자우편(국경검사대 송부), 화물 검사서 비교 검사(이 단계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수입업자가 화물반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사), 외환 관리 및 신고금액 검사
- 외환관리 제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유효성 검사
 - 수입계약서가 러시아 외환관리제도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사
 - 신고된 액수가 관련 서류(계약서, 운송서류, 지불조건, 인보이스 등)와 일치하는지 여부 검사 등을 하게 됨
- ④ 4단계 : 통관비 결정
- 신고인이 화물 통관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검사
 - 통관신고서 재검토, 특히 관세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
 - 특혜관세 대상 제품의 경우 서류 정밀 재검토
 - 관세가 정확한 방법으로 산정 되었는지 여부 다시 검사
 - 신고인이 관세 납부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체크
- ⑤ 5단계 : Deposit 금액 환불(수입업자는 러시아내 상품을 반입한 후 4일 이내 통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Deposit을 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 5단계를 거치는 데에는 약 2~7일이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Deposit 날짜에 따라 달라짐
- ⑥ 6단계 :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모든 관련서류 사본은 승인을 얻기 위해 러시아 관세위원회에 송부되며, 관세위원회에서의 승인이 떨어진 후 세관 검사원은 상품의 최종통관 결정을 내림
- 통관 구비 서류
- 수입계약서
 - 세관신고서(소정양식)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운송서류
 - 외환규제제도에 따른 서류 및 물품가액 증면서류
- * 일부 수입물품에 따라서는 아래 서류도 제출해야 함
-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에서 발행하는 (수입)면허 원본

- 관련기관(농업부) 등에서 발행한 수입허가 서류 원본
- 각종 인증서류(원산지 증명서, 원생 인증, 안전 인증, 가축병 증명서, 식물 위생 증명서 등)

□ 견본, 전시품 통관상의 불편사항

- 현지 지, 상사의 견본품 및 홍보자료를 딜러 명의로 통관하지 않고 직접 지, 상사 명의로 통관할 경우, 소량은 세법에 준한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이 가능하나, 다량은 통관이 불가능하며 세관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여 통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전시회 출품이나 업체가 상담을 위하여 물품을 러시아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전량 반출조건에 의한 통과만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업체는 물품 가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출 보증금으로 예치할 것을 요구하나 수입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지불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특히, 전량 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경우 해당물품의 분실 또는 1년 내 미반출시에는 송장 가격에 근거하여 60~600%의 벌금을 부과함
- 통관이 지연될 경우 물품 입고 후 3일부터 kg당 0.35달러가 매일 부과(항공 화물)되고 송장과 실제물품이 다른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15일 후 통관 또는 6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송장 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에도 벌금을 부과함

□ 통관 유의사항

- 경제개혁과 함께 러시아의 수입관세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차원의 불법, 편법 통관 물품에 대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수입 관세 산정에 있어서도 강화되고 있음. 최근 러시아 관세위원회가 각 세관으로 보낸 수입물품 관세 산출시 운송비 적용에 대한 지시에 따르면, 관세 산정시 상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2000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시 거래내역 문서규정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향후 편법 통관된 물품은 판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모든 도,소매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래내역서에 판매한 물품의 정확한 명칭, 원산지 그리고 세관신고서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법 통관된 물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한편, 조세징수 기관은 실제로 도, 소매상이 판매한 물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물품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인보이스상 명기된 물품내역은 거래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과 일치할 것
- 통관시 HS코드를 정확히 명기할 것
- 관세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품가액 평가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 후 제시할 것(수출 신고 사본, 가격표 등)
-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보세창고 및 담당 세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것

2) 수입허가제도

- 알코올 제품은 그 수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저장 및 수입 허가를 보유하였을 때에만 세관통과가 가능
 - 러시아 내에서의 에틸알코올, 알코올 제품, 알코올 함유제품에 대한 생산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연방법 171에 의해 적용 받음
 - 연방법 171은 러시아 수입제품 표시규정, 수입관련 필요 서류, 알코올의 the Unified State Automated System (EGAIS) 등록제도, 제품정보 및 품질 기준 등을 규정
 - 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러시아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규정된 수입 알코올 제품 표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입자는 EGAIS에 알코올 제품 수입등록을 하고 제품정보를 인쇄하고 확인 마크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제품포장에 부착해야 함

- 육류제품은 수입자가 수입쿼터를 할당받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수입허가 관련부처: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 의약품 또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가능(수입허가 관련부처: 러시아 연방경제개발부)

3) 수입쿼터제도

- 쿼터제도는 1995년 10월 13일 ‘대외교역 국가 규제법’에 규제되어 있는 러시아의 자국 생산자 및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러시아의 WTO 가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임
- 쿼터의 배분은 입찰, 경매 등을 통해 배정되는데 주로 전년도 수입량과 비교해 배정되지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유행병이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수입량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상황을 감안하여 배정되기도 함
 - 수입식품 쿼터는 보통 국내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데 2008년 현재 적용되는 품목은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육류
- 러시아는 2004년부터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류에 대한 수입쿼터물량을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에서 발표하고 있음
 - 2005년 12월 5일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쿼터물량을 발표하였고, 매년 참가 신청업체별로 쿼터물량 할당
 - EU, 미국, 파라과이 및 수입금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는 기타국가 쿼터물량에 한해서 능력이 되는 만큼 수출이 가능. 따라서 한국에 대한 쿼터 물량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쿼터물량 할당 참가업체의 능력 및 여건에 따라 수출 가능물량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
 - 쿼터물량 할당은 러시아 대외경제활동 참가업체의 신청을 기초로 결정

- 감독당국의 사후 검사 시 적발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
- 미인증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요소로 작용
- 인증이 면제되는 제품도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이 제고되어 마케팅 활동에 유리

□ GOST 인증서 관리, 대행기관

- 관리기관 : 러시아연방표준위원회(GOSSTANDART) → 2004년 대통령령 No. 314-4에 의거, 러시아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으로 명칭 변경
- 인증취득을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테스트센터에서 제품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결정
- 한국 소재 관련 검사·시험기관
 - 한국산업 기술 시험원 <http://www.ktl.re.kr>
 - 인증대행기관
 - (1) 씨티알 파 이스트(주)(CTR Far East) <http://www.kr.sgs.com>
 - (주)한국 SGS와 러시아연방표준위원회의 합작법인이며 러시아로 수출하는 제품과 시스템에 대하여 GOST 규정에 따라 인증과 시험을 담당
 - (2) 세르콘스 코리아(Sercons Korea) <http://www.sercons.co.kr>
- 인증 미취득시 제재사항
 - 강제인증 대상제품이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에 가함
 - 인증 취득 후 규격 미달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업에 10일 이내 시정 조치
 - 해당기업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제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으며, 법적책임 부과
 - 법원에서 제품 환수판결을 내리면 해당기업은 환수 기한 내에 제품을 모두 수거
 - 법원판결이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들에게 제품 환수 사실 공지

- 해당기업이 기한 내에 제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에서 제품 환수 조치를 내리며, 해당기업이 관련비용을 부담

□ 인증의 종류와 대상

○ 러시아의 인증제도는 강제 여부에 따라 자율인증과 강제인증으로 구분됨

가) 자율인증

-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인증으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위해 사용되며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수행됨. 법에 의해 인증발급 허가를 받은 모든 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일부기관은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모두 취급함. 수입업체 또는 무역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이 러시아 정부의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경쟁제품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마케팅수단으로 주로 사용됨
-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 : 개인사용 및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제품,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제품, 기반입 설비에 대한 수리 및 대체 부품, 인도주의적 목적이거나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반입되는 물품, 중고제품

나) 강제인증

- 러시아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품류,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 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석유 등을 위한 설비 등에 적용됨. 강제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은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결정, 수차례 갱신되고 있으며, 인증대상의 명칭과 HS코드, 강제인증 발급 시 요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강제인증 대상품목

- 식품류(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유지류, 주류 등 음료 등)
- 가축류
- 동물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제품(사료, 백신 등)
- 살충제 및 화학비료

- 유전자 변형 결과를 포함하는 제품과 서비스
- 알코올제품과 생산 장비
- 삼림(임업) 관련원료, 목재류(원목 및 가공품 등)
- 화학제품(비료, 세제류, 기타 화학제품, 고무 및 고무제품 등)
- 신발류, 의류 및 편물제품
- 금속제품(동, 알루미늄, 철, 금속제품 등)
- 기계류(원자로, 보일러, 각종 제품 생산기기, 가공기기, 기타 기계부속품 등)
- 난방기구류
- 위험스러운 생산 장소에 설치된 기술 장비(압력기, 리프팅 및 호이스팅 기계, 펌프, 광산, 석유가스, 야금 및 기타 산업관련 장비)
- 지상 운송수단 기기류
- 각종 가구 및 가구 부속품류
- 각종 스포츠용품류
- 통신시설, 도구 및 서비스
-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도구
- 에너지소비제품과 에너지자원, 가스와 석탄
- 우주항공장비
- 화재관련제품
- 측지학, 지도제작, 지형학 관련제품
- 원자력산업 관련제품과 기술
- 무기관련제품

○ 수출 횟수에 따라 단일선적인증(일회성수출인증), 연속생산인증(연속성수출인증)으로 구분됨

(1) 단일 선적인증(일회성 수출인증)

- 단발적으로 수출할 경우
- 특정물품의 정해진 수량에 대해 인증
- 수출업체가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로 러시아에 고객(수입업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2) 연속 생산인증(연속성 수출인증)

- 수출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 정해진 기간 동안 선적횟수와 수량에 상관없이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러시아 기준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받은 인증기관에서 연간 검사
- 러시아 인증제도에는 GOST-R 이외에도 위생인증(Hygienic Certificate), 화재방지인증(Fire Safety Certificate), GOST-R 방폭인증, 건설인증(Gosstroy Certificate), 보건복지부인증(허가), 운송기기허가(Approval of Vehicle) 등이 있음
- 특히, 식품, 잡화, 조리기기, 건축자재 등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인증은 GOST-R 인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함(유효기간 1년, 5년). 위생인증에 관하여는 '위생검역제도' 부분 참조

□ GOST 인증서 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 GOST-R 인증 :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샘플테스트와 함께 러시아 위생증명서 획득 후 GOST 인증서 발급
- 발급절차
- 신청자는 관련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인증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러시아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에 제출
 - 접수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1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인증제도, 인증절차,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 목록 및 테스트센터 목록 등 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신청자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품 샘플과 관련 기술 자료를 선택한 검사기관으로 제출
 - 검사기관에서는 샘플 확인 및 테스트를 하며,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테스트 결과 관련 문서를 인증기관과 신청자에게 송부
 - 필요할 경우, 생산인증(또는 품질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반영

- * 평가 절차에는 공장 감사와 기술서류의 평가, 감독관 방문, 샘플링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증도 포함
- 테스트결과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품은 GOST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증취득제품 목록에 등재되며,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송부
- 제품 제조업체(판매자)는 제품이나 제품포장에 인증라벨을 붙여야 하며, 라벨을 붙이는 권한은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라이선스에 표기
- 이미 인증받은 제품의 검사감독은 인증과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내에 최소한 일 년에 한 차례 정도 시행

○ 제출서류

- GOST 인증신청서
-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작성: 생산자)
- GOST 테스트용 샘플 (각 제품별, 용량별 4개 이상)
- 러시아어 라벨링
- 위생검역증
- 기타 검사기관 요청자료

○ 첨부서류

- Packing List
- Commercial Invoice
- 제조일/유통기간
- 과일 및 식물은 식물위생검역증(Phytosanitary) 첨부

○ 발급 소요시간

-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1-2주 이내에 GOST 인증서 발급
- 러시아 보사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건강 보조식품(인삼, 특성성분-건강 치료 및 보조식품 등)과 육류 및 육류가공제품은 러시아에서만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기간은 제품에 따라 1.5-4개월 소요)

(1) 단일선적인증

- 인증절차: 서류제출→ 인증서발급
- 발급기간: 서류제출 후 1주일

(2) 연속생산인증

- 인증절차: 서류제출→ (필요시) 샘플테스트/공장심사→ 인증서발급
- 발급기간: 10-15일

* 위생인증

- 인증절차: 서류제출→ (필요시) 샘플테스트→ 인증서발급
- 발급기간: 5-30일

○ 발급비용

- 품목별 : 약 790,000원
- 러시아 위생증명서 비용(1년 인증유효) : 420,000원
- GOST 테스트(6개월동안 안전성 인증) : 250,000원(시험방법에 따라 상이)
- GOST-R 인증서(매 선적시) : 120,000원
- * 위 비용은 인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인증기간은 1-3년이 있음
- * GOST 인증서는 품목별로 받아야 하며 같은 종류의 추가 맛인 식품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 및 인증서에 추가 비용만 내고 발급 가능

□ 인증취득시 유의사항

○ 인증 비용 부담조건에 대해 바이어와 사전에 합의

- 바이어와의 가격협상 시 미리 인증비용에 대한 언급을 하여, 가격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필요
- 각종 입찰에 응할 경우에도 인증비용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
- 수출자와 수입자간 어느 쪽에서 인증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한 선택 사항인데,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수출자의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은 있으나 인증 만료기간까지 수입자가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
- 러시아 거래선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인증 신청 시 철저한 사전자료 준비
 - 러시아의 제품 분류 기준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
 - 국내에서 직접 인증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적합한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
- 인증기관의 인증 라이선스, 유효기간 및 인가범위 등 확인
 - 인증신청 전에 인증기관의 인증 라이선스를 검토하여 라이선스에 명시된 인증기관 명칭과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무자격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는 러시아세관과 러시아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기관 검사에 적발시 인증서 자격상실은 물론, 물품 전량 폐기 처분 또는 반입금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 상존
 - 인증기관별로 인가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가범위를 확인하고 인증 신청

5) 위생검역제도

□ 위생검역제도 개황

- 위생검역증(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은 제품, 활동 종류 또는 기술적 조건이 적용 가능한 위생 기준과 러시아 소비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위생 기준과 및 공중위생규정에 부합한다고 확인시켜주는 문서임. 수출 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관 시 식물검역과 함께 다시 검사함
- 위생검역증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복지 감독국(Rospotrebnadzor)에 의해 발급되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Hygienic Requirements For Foodstuff Safety and Nutrition(SanPiN 2.3.2.1078-01)
 - General Requirements For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Regarding Foodstuffs (GOST-R 51074-2003)
 - Hygienic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SanPiN 2.3.2.1293-03)

□ 위생검사절차

- 검사절차 : 제품검사 신청서 등록 및 서류제출 → 검사에 필요한 샘플 수량 결정 → 검사 관련 비용 계약체결 → 제품 관련 서류검사 및 제품테스트 → 검사결과에 따라 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 : 검사신청서, 수출입계약서, 안전증명서(수출국 발급), 제품설명서, 라벨(러시아어), 기타 검사기관 요청자료
- 위생검역증의 유효 기간은 제품의 유형, 제조 상황, 제출서류 및 규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1~5년간 유효함

6) 상품표시제도

□ 라벨링 요구조건

-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류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제품정보가 표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제품명
 - 제품성격, 등급, 분류
 -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출자, 수입자 이름, 국가, 주소
 - 중량 또는 부피
 - 영양정보
 - 원료
 - 제조일, 유통기한
 - 보관방법
 - GOST-R 품질인증마크



- 2005년 7월 1일 식품에 관한 소비자 정보를 위한 일반요건을 규정하는 GOST 51074-2003 발효
 - GOST 51074-2003는 도소매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전 식품, 외식업체 및 학교에 공급되는 제품, 기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식품에 대하여 규제(러시아어로 생산자 정보, 원산지, 상표, 중량, 성분, 영양 정보, 보관방법, 유통기한, 관련규정, 제품표준 등을 표시해야 함)
 - 또한 식품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의 라벨표시조건을 규제
- 육류제품의 라벨링 특이사항
 - 육류 및 육류 가공품 (Order # 13-8-01/2-1 of December 23, 1999) 도체(부분품 포함)의 경우 생산업체 표시와 함께 수출국 검사기관의 검사필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포장육,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등의 경우에는 포장에 이러한 인이 찍혀 있어야 함
 - GOST 51074-2003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담고 있음
 - 냉장(냉동)된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함
 - 통조림 제품의 경우, 육류성분, 지방, 내장 및 기타 부위 및 식물성 원료의 함유비율을 표기해야 함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

□ 포장기준

- 현행 식품포장과 관련하여 169개의 GOST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통과정에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규정임.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대해서는 HN 2.3.3.972-00에서 위생기준을 규정. HN 2.3.3.972-00는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의 최대허용 화학물질 함유량을 표시
- 포장재와 운반상자는 위생검역을 받아야 하고, 품질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허용 사이즈, 형태, 운반상자의 재질은 GOST ISO 3394-99에서 규정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제품의 특성에 따른 포장조건을 충족해야 함
 - 포장된 곡물의 경우, 농업부 명령 681에 따라 공기가 투과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
 - 냉장육류의 경우,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기 투과성이 낮은 재질, 색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가스 투과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

7) 수의검역제도

□ 수의검역제도 개황

- 러시아로 수입되는 육류제품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 Rosselkhnadzor, VPSS)의 검사와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육류 처리, 가공, 저장시설은 동식물검역국의 검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은 공식목록에 기재되어야 함. 검사 비용은 해당시설 부담
- 쿼터 물량을 획득한 수입자는 동식물검역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가 관련 지방 수의검역기관에 육류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중앙 수의검역기관에 신청서를 보냄. 중앙 수의검역기관은 국경당국에 수입을 허가하는 통지서를 보내며, 본 문서에는 수입원산지 및 물량 등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 수입쿼터 물량을 매년 배정함에 따라 수입자는 매년 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화물이 국경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국경 동식물검역소에서 국내 수의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수의검역 시 수출입계약서, 선적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세관신고서, 수의검역증, 위생검역증, 안전증명서, 품질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수입요건

(1) 육류 : Letter No. 13-8-01/2-1 of December 23, 1999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아래 질병이 창궐하지 않는 지역제품만 수입 가능함
- a. 전체
 - African swine cholera (최근 3년간 해당국)
 - 구제역(최근 12개월간 해당국)
- b. 소
 - Spongiform encephalopathy (해당국)
 - Pestis bovina, Pleuropneumonia contagiosa, Stomatitis vesicularis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 Tuberculosis, brucelliasis, leucosis (최근 6개월간 해당 지방)
 - Sverdlovsk anthrax leak, enphysematous carbuncle (최근 20일간 해당 지방)
- c. 염소, 양
 - Spongiform encephalopathy (해당국)
 - Blue tongue, cholera and contagious pleuropneumonia (최근 12개월간 해당국)
 - Adematosis, arthritis, enthephalitis (최근 3년간 해당지역)
 - Ovinia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 Tuberculosis, brucelliasis (최근 6개월간 해당 지방)
 - Sverdlovsk anthrax leak (최근 20일간 해당 지방)

d. 돼지

- Swine vesicular disease (최근 12개월간 해당 국가)
- Swine classical cholera, enterovirus encephalomyelitis(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 Trichinellosis (최근 3년간 해당 지역)
- Reproductive respiratory syndrome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 Sverdlovsk anthrax leak, Diamond-skin disease (최근 20일간 해당 지역)
- 유전자 조작 사료(genetically modified products)를 먹인 고기도 수입이 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러시아로 수입할 수 없음
 - 도살 후 검사에서 구제역, 콜레라, 결핵, leucosis 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 보존 기간 중 해동되었을 경우
 - 부패, 변질 징후가 보일 경우
 - 냉동육의 경우 뼈 근처의 근육이 -8도 이상, 기타 부분이 4도 이상에서 보존되었을 경우
 - 내장에서 금지 잔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가공처리된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전염가능한 미생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2) 가금류 : Letter No. 13-8-01/2-2 of December 23, 1999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가능함
 - a. African swine cholera (해당국 최근 3년);
 - b. Mouth disease (해당지역 최근 12개월);
 - c. 뉴캐슬병, bird fever, 콜레라(해당 지역 최근 6개월);
 - d. Ornithosis, Parainfluenza Virus Infection, turkey rhinotracheitis,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infectious encephalomyelitis (사육지역 최근 6개월, 닭, 칠면조 해당)

- e. Dergy disease, Virus hepatitis of small ducks, Ornithosis (오리, 거위 해당, 사육지역 최근 6개월);
- 유전자 조작 사료(genetically modified products)를 먹인 고기도 수입이 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러시아로 수입할 수 없음
 - 도살 후 검사에서 기생충 및 기타 유독 병원균이 발견되었을 경우
 -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 나쁜 감각적 특징(bad organoleptic features)이 있을 경우
 - 냉동육의 경우 근육 온도가 -18도가 넘을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전염가능한 미생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가공처리된 경우
 - 부패, 변질 징후가 보일 경우 등
- 포장은 1회용이어야 하며,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3) 캔, 소시지 등 완전가공된 육류제품 : Order No. 13-8-01/2-4 of December 23, 1999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 또한,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가축이어야 함
- 육류와 마찬가지로 extra-gen/hormone agents, thireostatic agents, antibiotics, pesticides, African swine cholera (for 3 years), great cattle cholera (12months, mouth disease (for 6 months) 등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함
- 이외에 포장은 위생 규정에 맞게 1회용이며 밀봉되어야 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 됨

(4) 우유 및 유제품 : Order No. 13-8-01/2-6 of December 23, 1999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함
 - African swine cholera (최근 3년간 해당국);
 - Mouth disease, contagious pleuropneumonia and vesicular stomatitis of great cattle (최근 12개월 해당국)
 - Brucellosis of great cattle, leucosis, tuberculosis, para-tuberculosis (최근 12개월 생산지역)
 - Brucellosis of goat and sheep (최근 2년간 생산지역)
 - Pox of goat and sheep (최근 6개월간 생산지역);
-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살모넬라균 및 기타 독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함
- 유제품 제조를 위한 우유는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유제품은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재처리되어야 함
- 제품은 나쁜 감각적 특징(bad organoleptic features)이 있을 경우, 포장 안전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될 수 있음. 포장은 1회용이어야 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 됨

(5)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Order No. 13-8-01/2-8 of December 23, 1999

- 신선/냉장/냉동 생선, 해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은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러시아에 수입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실은 수출국 검역기간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제품은 African swine cholera(최근 3년간), 구제역(최근 12개월)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바다 및 민물생선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기생충이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제거될 수 있음
- 또한, 사료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허됨

- 온도가 -18도 이상일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 병원균 감염에 의해 변화가 있을 경우
- 나쁜 감각적 특징(bad organoleptic features)이 있을 경우
- 보존 기간 중 해동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 자연적/인위적 extra-gen and hormone agents, thireostatic agents, antibiotics, pesticides 등의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포장은 위생규정에 부합하도록 1회용 제품이어야 함
- 제품 선적은 온도규정에 상응하지 않게 처리된 경우 러시아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이후 가능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 됨

(6) 계란 및 관련제품 : Order No. 13-8-01/2-10 of December 23, 1999

-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육된 건강한 지역에서 사육된 조류로부터 나온 제품이며,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통제를 받고 수출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 한편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수입될 수 있음
 - African swine cholera (최근 3년간)
 - Mouth disease (최근 12개월간)
 - Ornithosis, Paranix Virus Infection, infectious bronchitis of chickens, infectious laringotracheitis, infectious encephalomyelitis, Newcastle disease, bird fever (최근 12개월간)
- 또한 유전자 변형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조류로부터 생산된 달걀이어야 함
- 나쁜 감각적 특징이 있을 경우 또는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살모넬라균 등 유해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경우, 화학 처리되거나 자외선 처리되었을 경우 등은 수입이 불허됨
- 계란 가공제품은 안전보장을 위해 재처리되어야 하며 포장은 1회용이어야 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 됨

8) 식물검역제도

□ 식물검역제도 개황

-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물제품은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러시아 동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증을 받아야 함
- 식물검역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 the Federal Legislation on Plant Quarantine (2000.7.15)
 - the Ministry of Agriculture's Order N 681 (2002.9.3) "On plant quarantine while importing, storing, transporting, and using grain and grain products that are imported into Russia for food, feed, and processing"
 - the Ministry of Agriculture's Order N 163 (2007.3.14), "On Organizing Activities To Issue Phytosanitary And Quarantine Certificates"
- 검역절차
 - 수입자는 화물이 수출국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식물검역허가서(Import Quarantine Permit for imports of products subject to quarantine inspection)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품의 러시아 국경 도착과 함께 러시아 식물검역소는 대상물품 및 운송기기 검역
 - 검역 시 검역물질이 발견될 경우, 당국은 화물을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소독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소독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음
 - 검역을 통과하면 검역인증서(Quarantine Certificate)와 러시아 식물검역증명서(Act of the Russian government quarantine phytosanitary control)를 발급
 - 식물검역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다른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됨

- 수입품을 극동지역의 국경을 거쳐 모스크바로 운송하는 경우, 국경지역 식물 검역소에서 1차 검역, 도착지 식물검역소에서 2차 검역 시행

□ 국가식물위생검역관리를 받아야 하는 검역대상물품(물질/화물) 목록

가) 수출국의 국립식물검역보호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하고 수입검역허가서에 근거하여 반입되는 품목 그룹**

품목명	러시아 HS코드*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제1212호의 뿌리 제외)	0601
기타의 산 식물(뿌리 포함), 삽수, 접수	0602 (0602 90 100 0 제외)
절화와 꽃봉오리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신선)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절화와 꽃봉오리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건조/염색, 표백, 기타의 가공법 제외)	0603 90 000 0류
크리스마스용 나무	0604 91 200 0
침엽수 가지	0604 91 400 0
식물의 잎, 가지 및 기타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과 풀(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신선/건조/기타 가공하지 않은 것)	0604 91 900 0 0604 99 100 0
신선 또는 냉장 감자	0701
신선 또는 냉장 토마토	0702 00 000
양파, 쪽파, 마늘, 리크(<i>Allium porrum</i>)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	0703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Brassica 속의 식용채소 (신선 또는 냉장)	0704
상치(<i>Lactuca sativa</i>) 및 치커리(<i>Cichorium spp.</i>) (신선 또는 냉장)	0705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세러리아크, 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신선 또는 냉장)	0706
오이류 (신선 또는 냉장)	0707 00
채두류 (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	0708

품목명	러시아 HS코드*
기타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	0709
단옥수수 (종자용)	0712 90 110 0
건조한 채두류 (꼬투리가 없는 것/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713
식용으로 사용되는 매니옥 (카사바)	0714 10 910 0
식용으로 사용되는 고구마 혹은 마 (신선/ 원상의 것)	0714 20 100 0
식용으로 사용되는 칩, 살렘, 기타 이와 유사한 뿌리와 괴경(전분을 다량 함유한 것/ 신선)	0714 90 110 0류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 (신선 또는 건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소매유통용의 소비자 정량포장 또는 풀가포장 또는 기타 진공포장 제외)	0801류
기타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소매유통용의 건조 정량포장 또는 풀가포장 또는 진공포장 또는 기타포장 제외)	0802류
바나나(플렌틴 포함/ 신선 또는 건조/ 소매유통용의 정량포장 또는 풀가포장 또는 진공포장 또는 기타포장의 건조 제외)	0803 00류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애보카도우, 과아버, 망고 및 망고스틴, 혹은 임베 (신선 또는 건조/ 소매유통용의 건조 정량포장 또는 풀가포장 또는 진공포장 또는 기타포장 제외)	0804류
감귤류의 과실 (신선 또는 건조/ 소매유통용의 정량포장 또는 풀가포장 또는 진공포장 또는 기타포장의 건조 제외)	0805류
포도 (신선 또는 건조/ 소매유통용의 소비자정량포장 또는 풀가포장 또는 진공포장 또는 기타포장의 건조포도 제외)	0806류
멜론(수박 포함)과 파파야 (신선)	0807
사과, 배 및 마르멜로 (신선)	0808
살구, 버찌 및 양벚, 복숭아(넥타린 포함), 자두 및 슬로우 (신선)	0809
기타 과실 (신선)	0810
건조한 과실(제0801호-제0806호에 해당하는 과실 제외)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해당 그룹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소매유통용의 정량포장 또는 풀가포장 또는 진공포장 또는 기타포장 제외)	0813류
볶지 않은 커피 (카페인 유무 여부 불문/ 소매유통용의 정량 진공포장 제외)	0901 11 000류 0901 12 000류
밀과 메슬린	1001

품목명	러시아 HS코드*
호밀	1002 00 000 0
보리	1003 00
귀리	1004 00 000 0
옥수수	1005
쌀	1006
수수	1007 00
메밀, 조 및 카나리시드; 기타의 곡물	1008
밀가루 또는 호밀가루	1101 00
기타 곡물의 곡분 (밀가루 또는 호밀가루 제외)	1102
곡물의 분쇄물, 조분 (펠리트가 아닌 것)	1103류
기타 가공한 곡물(예를 들어,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빵은 것/ 제1006호의 쌀 제외)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4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 분과 조분	1106 10 000 0
맥아 (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1107
대두 (파쇄여부 불문)	1201 00
낙화생 (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소매유통용의 정량포장 혹은 풀가포장 혹은 진공포장 혹은 기타포장 제외)	1202류
코프라	1203 00 000 0
아마 종자 (파쇄여부 불문)	1204 00
유채 또는 콜자의 종자 (파쇄여부 불문)	1205
해바라기씨 (파쇄여부 불문)	1206 00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파쇄여부 불문)	1207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종자 제외)	1208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종자와 과실을 포함/ 신선 또는 건조/ 절단 ·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1211 (1211 30 000 0, 1211 40 000 0 제외)

품목명	러시아 HS코드*
사탕무	1212 91
메두기 콩(carob tree)의 과실 (종자 포함)	1212 99 300 0 ~ 1212 99 490 0
살구, 복숭아(넥타린 포함) 또는 자두의 핵; 치커리뿌리(Cichorium intybus sativum 종)	1212 99 700 0류
곡물의 껍과 껍질 (조제하지 않은 것/ 절단, 분쇄, 압착 여부 불문/ 펠리트 제외)	1213 00 000 0류
코코아두 (원상 또는 파쇄한 것, 볶지 않은 것 또는 볶은 것)	1801 00 000 0
코코아두의 각과 피,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2 00 000 0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또는 기타 가공법으로 생기는 것에 한함/ 펠리트가 아닌 것)	2302류
대두유 추출시에 얻어지는 대두박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의 여부불문/ 펠리트가 아닌 것)	2304 00 000류
낙화생유 추출시에 얻어지는 낙화생박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의 여부불문/ 펠리트가 아닌 것)	2305 00 000 0류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유지의 추출 시에 생긴 것/ 분쇄한 것 여부불문/ 펠리트가 아닌 것)	2306류
목재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의 케이블드럼, 목재의 펠렛·박스펠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재의 펠렛칼러(개별 상품이거나 따로 신고하는 것에 한함)	4415류

나) 수입검역허가서에 근거하여 반입되는 품목 그룹**

품목명	러시아 HS코드*
건조한 양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함)	0712 20 000 0
건조한 버섯류(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함)	0712 31 000 0 0712 32 000 0 0712 33 000 0 0712 39 000 0
건조한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함)	0712 90 (0712 90 110 0 제외)

품목명	러시아 HS코드*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볶은 커피 (소매유통용 정량포장 제외)	0901 21 000류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 (소매유통용 정량포장 제외)	0901 22 000류
커피의 각과 피	0901 90 100 0
녹차 (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소매유통용 정량포장 제외)	0902 10 000류
기타 녹차 (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0902 20 000 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 (소매유통용 정량포장 제외)	0902 30 000류
기타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	0902 40 000 0
마태 또는 파라과이 차 (소매유통용 정량포장 제외)	0903 00 000 0류
향신료 (소매유통용 정량포장 제외)	0904~0910류
정제용의 사탕수수조당	1701 11 100
정제용의 사탕무조당	1701 12 100
타피오카 (난알상의 것 제외)	1903 00 000 0류
혼합조미료 (소매유통용의 정량포장 제외)	2103 90 900 9류
도토리과 마로니에열매	2308 00 400 0류
사료용 조제품 (염화콜린 함유/ 유기로 이루어진 것)	2309 90 950 0류
기타 사료용 조제품 (펠리트가 아닌 것)	2309 90 990 0류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1

출처: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 “러시아 HS코드”에서 언급되는 “~류”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 해당 목록이 러시아연방대외활동품목분류에 의거하여 상기 코드에 따라 분류되는 전 품목들에 적용되지 않음을 지시하고 있음. 본 경우에는 품목 명칭(기술)에 따라야 함

** 시행된 국가식물위생검역관리 결과들에 따라 그 실행결과를 반영하는 국가식물위생검역관리법규가 성립됨

(1) 검역대상물품(검역대상물질, 검역대상화물)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는 국립식물보호검역기관의 식물위생규정에 입각하여 러시아연방 영토 밖으로 검역대상물품(검역대상물질, 검역대상화물) 반출 시에 작성됨

- (2) 상기 목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검역대상물품(검역대상물질, 검역대상화물)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는 수입국의 국가식물보호검역기관의 공식요구가 있는 경우에 작성됨
- (3) 러시아연방 영토 밖으로 반출되는 목재포장재 및 내부포장재(상기 목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을 위해 이용되는 것도 포함)는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ISPM No.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 (로마, 2002)에 의거한 표식이 있어야 함
- (4) 검역대상물품(검역대상물질, 검역대상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이용되고 러시아 연방에서 규정하는 검역병해충이 은폐할 수도 있는 수송수단과 수송설비 (컨테이너 포함)는 “식물검역 연방법” No.99-FZ(2000.07.15) 제9조에 의거한 식물검역 규정에 입각하여 의무적인 불순물 제거에 처하거나 혹은 필요할 시에 소독에 처할 수 있음

□ 러시아연방에서 검역 의미를 갖는 식물 병·해충 및 잡초 목록

I. 러시아연방 영토내 등록되지 않은 검역 병해충		
A. 식물 해충		<i>Anoplophora glabripennis</i> Motschulsky
		<i>Callosobruchus</i> spp.
		<i>Ceratitis capitata</i> Wied.
		<i>Conotrachelus nenuphar</i> Hb.
		<i>Diabrotica virgifera virgifera</i> Le Conte
		<i>Epitrix cucumeris</i> Harris
		<i>Epitrix tuberis</i> Gentner
		<i>Liriomyza huidobrensis</i> Blanch.
		<i>Liriomyza sativae</i> Blanch.
		<i>Liriomyza trifolii</i> Burg.
		<i>Popillia japonica</i> Newm.
		<i>Premnotrypes</i> spp.

B. 식물 병		<i>Pseudaulacaspis pentagona</i> (Targ.-Toz.)
		<i>Rhagoletis pomonella</i> Walsh.
		<i>Spodoptera littoralis</i> Boisd.
		<i>Spodoptera litura</i> Fabr.
		<i>Thrips palmi</i> Karny
		<i>Trogoderma granarium</i> Ev.
	진균	<i>Atropellis pinicola</i> Zeller & Goodding.
		<i>Atropellis piniphilla</i> (Weir.) Lohman & Cash
		<i>Ceratocystis fagacearum</i> (Bretz.) Hunt.
		<i>Didymella ligulicola</i> (K.F.Baker, Dimock & Davis) von Arx
		<i>Mycosphaerella dearnessii</i> M.E.Bar.
		<i>Neovossia indica</i> (Mitra) Mundkur (=Tilletia indica Mitra)
		<i>Phymatotrichopsis omnivora</i> (Duggar.) Hennebert (<i>Phymatotrichum omnivorum</i> (Duggar))
		<i>Puccinia horiana</i> Henn.
		<i>Stenocarpella macrospora</i> (Earle) Sutton (=Diplodia macrospora Earle)
		<i>Stenocarpella maydis</i> (Berkeley) Sutton (=D.maydis (Berkeley) Saccardo)
		<i>Thecaphora solani</i> Thirumet O'Brien. (=Angiosorus solani Thirumet O'Brien.)
	세균	<i>Erwinia amylovora</i> (Burill.) Winslow et al.
		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i>Pantoea stewartii</i> subsp. <i>stewartii</i> (Smith) Margaret et al. (=Erwinia stewartii (Smith) Dye)
		<i>Xanthomonas oryzae</i> pv. <i>oryzae</i> (Ishiyama) Swings et al.
		<i>Xanthomonas oryzae</i> pv. <i>oryzicola</i> (Fang.etal.) Swings et al.

		Xylophilus ampelinus (Panagopoulos) Willems et al.(=Xanthomonas ampelina Panagopoulos)
	바이 러스	Cherry rasp leaf nepovirus
		Peach latent mosaic viroid
		Peach rosette mosaic nepovirus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Potato T trichovirus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retBuhrer.) Nickle.
		Globodera pallida (Stone.) Mulvey et Stone.
		Meloidogyne chitwoodi Golden et al.
C. 잡초		Bidens pilosa L.
		Cenchrus pauciflorus Benth.
		Helianthus ciliaris DC.
		Ipomoea hederacea L.
		Ipomoea lacunosa L.
		Iva axillaris Pursh.
		Solanum carolinense L.
		Solanum elaeagnifolium Cav.
		Striga spp.
II.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제한적으로 전파되어있는 검역 병해충		
A. 식물 해충		Bemisia tabaci Gen.
		Carposina niponensis Wlsgh.
		Dendroctonus micans (Kugelman)
		Dendrolimus sibiricus Tschetw.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
		Grapholitha molesta Busck.
		Hyphantria cunea Drury

		Lymantria dispar L. (asian race)
		Monochamus spp.
		Phthorimaea operculella Zell.
		Quadraspidiotus perniciosus Comst.
		Viteus vitifolae Fitch.
B. 식물 병	진균	Cochliobolus heterostrophus Drechsler (=Bipolaris maydis (Nisikado) Shoem) (race T)
		Diaporthe helianthi Munt. Cvet. et al. (=Phomopsis helianthi Munt. Cvet. Et al.)
		Phytophthora fragariae Hickman
		Synchytrium endobioticum (Schilb.) Percival.
	세균	Ralstonia solanacearum (Smith) Yabuuchi et al. (=Pseudomonas solanacearum (Smith) Smith)
	바이러스	Plum pox potyvirus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Woll.) Behrens.
C. 잡초		Acroptilon repens DC.
		Ambrosia artemisiifolia L.
		Ambrosia psilostachya DC.
		Ambrosia trifida L.
		Cuscuta spp.
		Solanum rostratum Dun.
		Solanum triflorum Nutt.

출처: 러시아 동식물검역국